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농장 출입자의 농장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등 방역기준 준수 철저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의9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제2호
2. 가금농장의 소유자(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장 진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을 착용하고, 농장 출입 전·후 마다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 과정에서 **농장주 및 종사자**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등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농장에 진입한 방역 규정 위반사례**가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관계기관(부서)와 지자체, 관련 단체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가 농장 진입시 방역복 등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에 진입하도록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적용

* 가금 단체는 관련 가금 계열화사업자에게 동 방역기준 전달 협조.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역학조사과장,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박제민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전결 2021. 11. 29.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11024	(2021. 11. 29.)	접수	M00003328693	(2021. 11. 30.)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parkjemin@korea.kr	/ 대한민국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